● 제332회 ● 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(의안번호: 3099)

2025. 9. 9.

보건복지위원회

【서울특별시장 제출】

의안번호 3099

I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가. 의안번호: 3099

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다. 제출일: 2025년 8월 11일

라. 회 부 일 : 2025년 8월 12일

Ⅱ. 제안이유

- 가. 시립고덕양로원은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, 사 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2016년3월5일부터 수탁하여 운영중이나 재계약이 2026년3월4일 만료될 예정임
- 나. 민간위탁의 적합성,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(2025년 제5차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)에서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,
- 다.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의 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고덕양로원 관리 및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o 추진근거
 -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1항(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)
 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 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
 - ㅇ 추진 필요성
 - 노인양로시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.
 - 노인양로시설 운영은 인권보호, 자기결정, 자립생활, 사례관리, 비밀보장, 기록 및 공개, 사회통합, 전문서비스와 효율성, 부당청구 금지, 영리목적의 알선행위 등의 금지 등의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준수와 노인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.
 - 따라서 노인양로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것으로 판단됨.
- 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 - 시설보호대상 노인 입소보호
 - 입소노인의 인권보호, 건강관리, 급식위생, 안전관리
 - 상담·사회교육, 기능회복, 복리후생
 - 이 시립고덕양로원의 관리, 회계 규정 준수 등 운영 전반
 -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라,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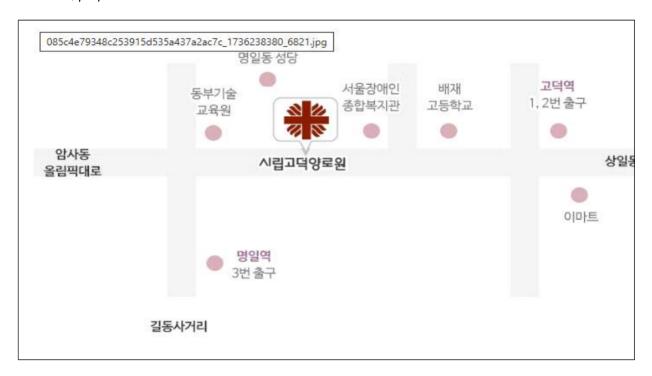
○ 소 재 지 :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99

○ 시설규모 : 대지 21,804m², 건물 3,573m² / 본관, 별관

○ 준공일자 : 1982.12.17.

○ 이용대상 : 거주지,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

○ 위치도

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1985.3.5. ~ 1990.3.4.(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 성모회)

- 2차 : 1990.3.5. ~ 1995.3.4.(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 성모회)

- 3차 : 1995.3.5. ~ 1998.3.4.(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 성모회)

- 4차 : 1998.3.5. ~ 2001.3.4.(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 성모회)

- 5차 : 2001.3.5. ~ 2004.3.4.(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 성모회)

- 6차 : 2004.3.5. ~ 2007.3.4.(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 성모회)

- 7차 : 2007.3.5. ~ 2010.3.4.(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 성모회)

- 8차 : 2010.3.5. ~ 2013.3.4.(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 성모회)
- 9차 : 2013.3.5. ~ 2016.3.4.(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 성모회)
- 10차 : 2016.3.5. ~ 2021.3.4.(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)
- 11차 : 2021.3.5. ~ 2026.3.4.(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)
- 마. 민간위탁기간 : 5년 (2026.3.5. ~ 2031.3.4.)
- 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시설형 재위탁
- 사. 소요예산 : 2,275백만원('25년 기준)
 - 인건비 2,017백만원, 운영비 105백만원, 사업비153백만원
- 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Ⅳ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○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 제1항
- ○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의 2
- ○「노인복지법」제32조의1
-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2조 및 제6조
- 「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. 제4조의3

V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임영미)

1 동의안 제출 개요

'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'은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6. 3. 4. 만료됨에 따라,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와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민간 위탁 절차¹)를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〈민간위탁 재위탁·재계약〉

재위탁 · 재계약 (「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('23.6.)」)

- o 재위탁 :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
- o 재계약: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(1회만 가능)
- 본 사무는 위탁 기간의 지도·감독 결과,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1회 후 재위탁을 추진함

¹⁾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^{1. &}quot;민간위탁"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,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^{2. &}quot;수탁기관"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,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^{3. &}quot;위탁사무"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.

^{4. &}quot;재위탁"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^{5. &}quot;재계약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○ 시립고덕양로원

- 소 재 지 :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99

- 개관일자 : 1969.6.4.

- 시설규모 : 대지 21,804㎡, 건물 3,573㎡ / 본관, 별관

-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ㆍ 서울시 거주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

·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·사회교육·기능회복·재가노인·복리후생·지역복지사업

ㆍ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- 위탁기간 : 5년 (2026.3.5. ~ 2031.3.4.)

- 선정방식 : 재위탁

- 소요예산 : 2,275,563천원(2025년)

2 동의안 대상 사무에 대한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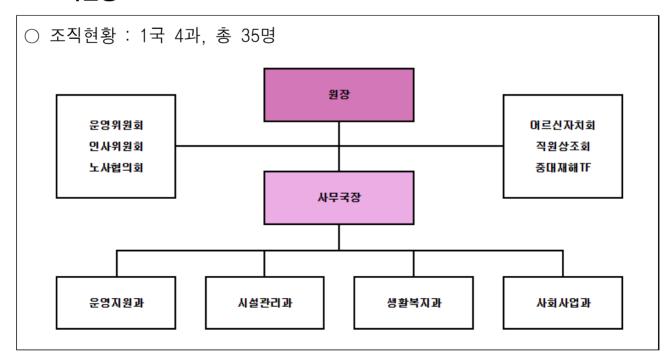
1.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현황

○ 시립고덕양로원은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임. 현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의 수탁 기간이 만료 (2021. 3. 4.)된 후 재계약 기간(2026. 3. 4.)도 만료됨에 따라신규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협약을 통해 5년간 (2026. 1. 20.~2031. 1. 19.) 재위탁하고자 함.

□ 민간위탁 추진 경위

구 분	위탁기간	수탁기관	선정방법	비고
1차	5년 (1985.3.5.~1990.3.4)	(재)영원한도움의 성모회	_	
 2차	5년 (1990.3.5.~1995.3.4.)	(재)영원한도움의 성모회	재위탁	
3차	3년 (1995.3.5.~1998.3.4.)	(재)영원한도움의 성모회	재계약	
 4차	3년 (1998.3.5.~2001.3.4.)	(재)영원한도움의 성모회	재위탁	
5차	3년 (2001.3.5.~2004.3.4.)	(재)영원한도움의 성모회	재계약	
6차	3년 (2004.3.5.~2007.3.4.)	(재)영원한도움의 성모회	재위탁	
7차	3년 (2007.3.5.~2010.3.4.)	(재)영원한도움의 성모회	재계약	
8차	3년 (2010.3.5.~2013.3.4.)	(재)영원한도움의 성모회	재위탁	
9차	3년 (2013.3.5.~2016.3.4.)	(재)영원한도움의 성모회	재계약	
10차	5년 (2016.3.5.~2021.3.4.)	(사복)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	재위탁	
11차	5년 (2021.3.5.~2026.3.4.)	(사복)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	재계약	

□ 조직현황



□ 인력현황

(단위:명)

인원	원장	사무 국장	사회 복지사	간호사	촉탁의	물리 치료사	영양사	사무원	생활 지도원	조리원	위생원	관리원	시설 기사	운전 기사
35	1	1	2	2	1	1	1	1	14	5	2	2	1	1

○ 종사자 인력 구성 및 직원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7조 (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기준등)의 기준을 기본안으로 채용됨.

□ 입소율(정원/현원 현황)

(매년 12월 말 기준)

		2022년		2023년		2024년		
구분	정원	수급자	실비	수급자	실비	수급자	실비	
입소자(명)	104	63	20	65	25	67	23	
입소 <u>율(%)</u>		80	80%		87%		87%	

※ 입소율=현원/정원*100%

□ 입소자 현황

(2025.4월 말 기준)

- 수급자 및 실비, 연령, 남녀 현황

		인원	(수)		ç	변령별 비율	2	
구분	총계	수급자	실비	65세	70대	80대	90대	100세
				이상				이상
소계	88	61	27	1	12	42	29	4
남	28	16	12	0	5	18	5	0
여	60	45	15	1	7	24	24	4

※ 평균연령 87.4세(남85세, 여88.6세), 최고령(102세), 최연소(69세)

- 입소기간별 현황

(기준일: 2025.6월)

구분	계	1-4년	5-9년	10-14년	15-19년	20년 이상
 계	88	48	15	11	8	6
남	28	18	2	3	1	4
여	60	30	13	8	7	2

※ 평균입소기간 6.9년(남6.9년, 여7년), 최장입소(29년)

□ 예산 집행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교부액	집행액	집행률
2022년	1,803,835	1,779,467	98.6%
2023년	1,915,592	1,863,121	97.3%
2024년	2,162,312	2,143,962	99.2%
2025년 (6월 말 기준)	1,103,369	898,741	81.5%

○ 최근 3년간 집행률은 97% 이상을 유지하여 보조금 지원과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짐. 최근 3년 중 2024년의 집행률이 99.2%로 가장 높았으며,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는 교부액대비 집행률이 약 81.5%로, 연말까지 추가 교부 집행이 진행될것으로 예상됨.

□ 예산 세부 내역

(단위: 처원)

구분	예	산과목	2025년	구성비율
		계	2,809,541	100%
	OLELZ	민간위탁금	2,275,563	81
	위탁금	민간위탁사업비	-	-
		국비보조금	123,954	4.4
	보조금	시비보조금	96,656	3.4
		구비보조금	8,500	0.3
세입예산	사업 수입	시설이용료 수입	-	-
		실비입소비용수입	150,965	5.4
	사업외수입	법인전입금	20,000	0.7
		후원금	25,000	0.9
		이월금	67,141	2.4
		기타잡수입	41,762	1.5
		계	2,809,541	100%
	인건비		2,041,837	72.7
	운영비		659,084	23.5
	,	사업비	45,880	1.6
	사업	법외지 출	4,590	0.2
세출예산	0	ᅨ비비	1,000	-
	지난	년도지출	_	_
	Ę	반환금	19,908	0.7
	일반	반관리비	37,242	1.3
		이윤	-	_
	부기	가가치세	-	-

- 2025년 세입과 세출 예산은 2,809,541천 원으로 편성되었음.
 - 세입예산 중 위탁금이 2,275,563천 원으로 전체의 81%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, 국비보조금 4.4%, 시비보조금 3.4%, 실비입소비용수입 5.4% 등의 순으로 나타남. 후원금, 법인전입금, 기타잡수입 등은 각각 1% 미만의 비중으로 매우 소규모인 것으로

확인됨.

-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가 2,041,837천 원으로 72.7%를 차지하며 가장 큰 항목임을 보여주었으며, 운영비가 23.5%, 사업비 1.6%, 반환금 0.7% 순으로 나타남. 전반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중심의 예산 구조인 것으로 확인 됨.

□ 주요 운영실적

IINHE		шним	Di .	계호	
사업분류		세부사업	8	목표(회/명)	예산(천원)
	사진공모전(인생	, 그리고 형	·기를 담다)	1/200	5,000
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	겨우살이축제			1/40	4,000
시크시된 12세시 H	부활·성탄 나눔			2/200	1,000
	후원자·자원봉사			1/30	1,000
네트워크사업	네트워크사업(우			2/12	200
특화사업	인생의 책장에미 한스푼+'	사지막 추억	한 장을더하다'추억	8/10	1,000
	.마지막 동행			 발생시	500
	명절행사 및 나눔	 5행사	명절행사	2/110	2,000
			신년인사	1/73	0
			어버이날행사	1/55	1,000
년 연중행사	행복드림		생신잔치	12/72	
	(오! 해피데이)		백수연	1/1	1,900
	(4: %-1-1/4/)		성탄 및		
			송년 잔치	1/55	1,000
사회적지지망 형성 사업	가족간담회		OL LI	1/10	300
111110001		장보기지원	1	24/360	0
	취향맞춤서비스	은행업무지원		120/120	0
		금전출납관	난리	발생시	0
일상생활지원사업		배변관리		365/	_
				2,920	0
	때빼고광내고	목욕지원		52/416	0
		이미용서비스		36/396	0
	호스피스	1 10 1		 발생시	0
			봄나들이	1/16	500
		실크닉	가을 나들이	1/16	500
	나들이프로그램			2/10	300
심리정서지원사업		소확행	전통시장	4/20	400
			힐링타임	2/10	`300
		cat's cin		10/200	300
	신나는나의인생	노래교실		30/450	2,500
		원내공연관	· 난람	5/250	0

110111	세부사업명		계획	계획			
사업분류		세무사업	4 8	목표(회/명)	예산(천원)		
		가요청백?	전	1/55	800		
			십자가의 길	횟수:7 인원:49	0		
	신앙 및영적지원	천주교	봉성체	횟수:10 인원:100	0		
			성지순례	횟수:2 인원:60	3,000		
	사업	개신교	성지순례	횟수:1 인원:15	300		
		불교	성지순례	횟수:1 인원8	200		
	장기입원자관리			12/132	0		
	생활실 이동			2/10	0		
	어르신 간담회 및	자치회		4/240	0		
	어르신 인권교육			2/110	0		
	어르신 응급대처.			1/60	0		
교육지원사업	어르신 치매예방	교육		1/60	0		
파퓩시천사i 	어르신 보건교육			3/180	200		
	어르신 구강교육			1/60	0		
	어르신 낙상예방	교육		4/240	0		
	늘푸른		미술놀이	30/300	2,650		
	나의		포크댄스	30/540	2,500		
			원예활동	16/160	2,880		
	인생		건강스마일	30/360	200		
=11 -14 -101.101	치매예방사업			1/50	0		
기능회복지원사업	물리치료 서비스			75/3,375	1,180		
			기능평가	2/146			
	재활지원사업		보장구		0		
	"		조사	4/160	ŭ		
	촉탁의진료			24/312	0		
	외래진료			10/730	120		
	입 ● 퇴원관리			1/11	0		
	간호처치			13/949	0		
의료 • 간호	응급지원			1/4	60		
•	투약관리			365/26,645	0		
서비스 사업	건강검진사업			1/60	0		
	예방관리사업			3/193	0		
	약물관리사업			109/7,567	2,200		
	건강관리사업			24/1,009	0		
	.식자재납품업체	계약		1 회	350		
	급식운영			1,095/76,650	0		
	특별식관리			1,376/28,845	0		
급식 운영관리	급식실위생관리			732/2,197	0		
비금 도워된다	행사관리			14/1,230	0		
	영양·위생 교육			26/153	0		
	'잔반줄이기' 캠페	인		377/36,661	0		
이세크크	공용시설 위생관	<u></u> 믜		228/228	0		
위생관리	세탁물관리			228/3,000	0		
	시설유지보수			561/1,122	1,900		
	법정안전점검 및	청소		18/18	3,943		
시설안전 및 유지관리	안전교육	<u> </u>		3/210	0		
	장비관리			15/15	0		
				13/13	U		

사업분류	세부사업명	계획		
사람단규	州十八百8	목표(회/명)	예산(천원)	
	차량운행 및 관리	616/616	7,880	
	비품관리	41/82	1,500	

 2025년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 스부터 지역사회연계사업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.

2. 운영평가 결과

○ 2021년과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²⁾ 결과에 따르면 "A등급"으로 "적정" 양로시설로 평가됨.

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

<2024년 양로시설 평가>

- 평가영역: 5개 영역 37개 지표
 - 시설 및 환경(3개 지표), 재정 및 조직운영(13개 지표), 프로그램 및 서비스(12개지표), 생활인의 권리(5개지표), 시설운영전반(4개 지표)

○ 평가결과

	평균			평가영역		
연도	등급	시설 및 환경	재정 및 조직운영	프로그램 서비스	생활인의 권리	시설운영 전반
2024	Α	А	А	А	А	А

<2021년 양로시설 평가>

- 평가영역: 6개 영역 45개 지표
 - 시설 및 환경(5개지표), 재정 및 조직운영(13개지표), 프로그램 및

²⁾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(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) ① 조례 제18 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.

서비스(12개지표), 생활인의 권리(7개지표), 지역사회 관계(5개지표), 시설운영전반(3개지표)

○ 평가결과

	-1-			평가영역	역		
연도	균 평 등	시설 및 환경	재정 및 조직운영	프로그램 서비스	생활인 의 권리	지역사 회관계	시설운영 전반
2021	Α	В	В	А	А	А	А

※ 등급 구분 기준 : A등급 90점이상, B등급 80점이상 90점미만, C등급 70점이상 80점 미만, D등급 60점이상 70점미만, F등급 60점미만

○ 2021년 평가에서는 시설 및 환경, 재정 및 조직운영이 80점 이상 "B등급"으로 평가되었으나. 2024년 평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90점이상 "A등급"으로 운영 전반에 높은 평가를 받아 평가 결과가 상향되었음이 확인됨.

□ 지도감독결과

연도	점검결과	조치결과
2024년	- 사업외수입(실비입소비용, 잡수입) 잔액 발생, 적정 지출 요청	시정조치 완료
2023년	- 후원금 사용결과 양식 준수 - 프로그램관리 철저	시정조치 완료
2022년	시설 운영규정 등 현행 법령 반영하여 개정 필요운영위원회 운영 미흡물품관리자 및 출납원 지정 보완	시정조치 완료

 최근 3년간 실시된 종사자·이용인 관리, 회계관리, 시설 등 전반적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사업외 수입 잔액 발생에 따른 적정지출 요청, 후원금 사용결과 양식 준수, 프로그램 관리 철저 등이 지적되었 으나 시정 조치완료된 것으로 확인됨.

3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

- 시립고덕양로원의 사무는 노인 및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고품질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운영을 위한 사무 이며, 이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」제6조 제1호³) 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함
-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욕구 대응을 위해 장기적·지속적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기에 노인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운영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
 - 시설보호대상 노인 등의 입소, 돌봄 보호, 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개발, 운영, 입소 이용 노인 및 시설의 안전 관리 등 노인들을 위한 통합서비스로서, 인력·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측면에서 직영보다 위탁 방식이 적합함.

³⁾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^{1.} 노인・장애인・여성・청소년・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□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

위탁사무명	유 형	現수탁법인	위탁예정기간	심의 결과
시립고덕양로원 관리 및 운영	재위탁	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	5년 이내 ('26.01.20~'31.01.19)	적정

4 종합의견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사무를 연장하고 신규 또는 기존 법인에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 각 시설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따라 전문성, 공공 서비스의 지속 필요성, 예산 절감,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축적 대응의 확보, 경쟁력 강화 등의 사유로 지속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동의안에 대한 위탁 사무는 노인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 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- 수탁기관은 공공성과 청렴성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추후 수탁기 관을 운영할 법인 선정 시 기관 운영관리, 조직역량, 사업역량 등을 상 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 골든빌리지 조성에 따른 양로원 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본 운영뿐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유연성 있는 수탁 법인을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.

전 문 위 원	김소은	02-2180-8144
입법조사관	김진영	02-2180-8140